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1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전파감시, 전파교란 대응
-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
- 전파차단장치 제조 · 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
- 국내 · 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
- 불법무선국 조사 · 단속
-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 · 단속

2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 · 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 · 단속 및 탐지업 등록 · 관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 · 감독
- 무선국 전자파 관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 신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

3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 무선국 허가 · 검사, 방송국 검사
- 공중케이블 점검
- 방송통신사업 등록 · 관리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
- 전파사용료 부과 · 징수
-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
-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
-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 감독

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상담 080-700-0074 / 02-3400-2000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crms.go.kr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허가·신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허가·신고하고 사용합시다.

무선국이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선국 허가·신고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 이동국,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적합성 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무선국 재허가

허가받은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허가(변경)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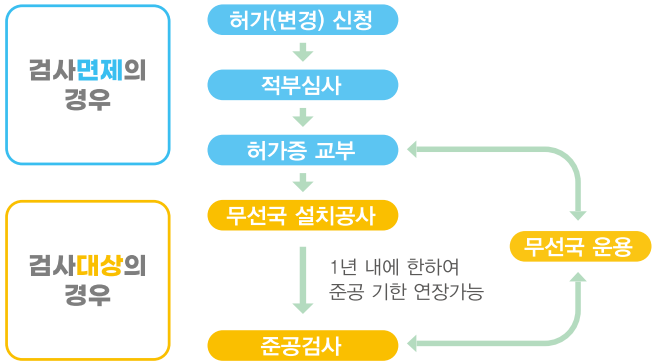

무선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무선국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운용해야 합니다.

무선국의 목적, 통신 상대방 및 통신사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 · 구성 및 이득, 운용허용시간 등

아날로그 무선국 사용 중지 안내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대역 및
138㎒~174㎒, 216㎒~223㎒,
335.4㎒~470㎒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설비는 무선국 신규·변경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존 허가받은 아날로그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철도관련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신고)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허용

무선국 폐지 및 운용 휴지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
하려면 반드시 관할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불법무선국을 운용하지 맙시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알기 쉬운 전파 관련 용어 해설

- ▶**전파형식:** 전파의 변조방법, 송신정보의 형태 및 추가적 특성 등을 부호와 숫자로 분류한 것
  (예시) F3E, G3E – 아날로그 통신방식
  F1D, F2D, G1D, G2D – 디지털 통신방식
- ▶**LTE-M:**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 ▶**LTE-R:** 철도통합무선통신망
- ▶**PS-LTE:** 재난안전무선통신망
- ▶**통합공공망:**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해상초고속 무선통신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공공망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통신망
- ▶**C-ITS:** 차량사물통신(V2X)을 이용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 ▶**UAM:** 도심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
- ▶**이음5G:**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crm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msit.go.kr
전파 · 방송통신민원: 080-700-0074